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사격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사격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은 조직 운영,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맹 「규약」,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맹 행정의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은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규정」 제2조(적용)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정한다고 되어있다.

연맹은 모든 예산 집행 시 본회 「회계규정」 제42조(지출원인행위)¹⁾, 제43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²⁾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5항³⁾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 1) 제42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제43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회장은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소관부서에 설치된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 3)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방법)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달성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를 통해 집행의사를 결정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결의를 통해 지출하는 등 집행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모든 예산 집행 시 집행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하여야 하나, 각종 사업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20**년도 ○○○○과 경기도●●●● 사업에서만 지출품의와 지출결의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회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 치 사 항] 경기사격연맹장은

연맹의 각종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에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고 지출품의에 따른 회계 지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를 관리하여 집행하는 등 집행절차와 회계책임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사격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사격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사격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및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의거, 규약 및 기타규정을 절차에 맞게 의결하여 제·개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규약」 제50조(사무국 운영 등), 제52조(정관변경), 제53조(규정 제·개정 등)에 의거, 연맹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을 참고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및 총회 의결 등을 거쳐 규정 제·개정을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연맹은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가. 연맹 「규약」 관리 미흡

연맹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제1항에 따라, 본회 각종 규정을 참고하여 연맹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맹은 2022년 개정된 이후 2023년도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기타규정 관리 미흡

연맹은 회장선거관리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제정해 행정처리하고 있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9년도 이후에는 개정하지 않아 최신화 되지 않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맹운영에 필요한 기타규정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상위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처리하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사격연맹장은

연맹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최신화하고 기타규정은 운영을 검토하여 필요한 규정은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각종위원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사격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사격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은 「경기도사격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등에 따라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연맹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정이 최신화 되지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원회가 1개뿐이고 이사회를 대신하여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위원회를 미구성한 상태로 연맹을 운영하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사격연맹장은

연맹「규약」 및 본회「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각종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